폐 기 결 과 보 고 서			
피 의 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
	직업		
	주거		
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사 건	사 건 번 호		
	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서 번 호		
	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종 료 일		
	전 기 통 신 보 관 등 승 인 서 번 호		
	전 기 통 신 보 관 등 승인(기각) 통지일	20 .	
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2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였습니다.			
폐기의 이유			
폐기의 범위			
폐기의 일시	20	:	
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			
경과 및 요지,			
그 주체 및 방법 폐 기 한			
전 기 통 신 의 목 록			
20			
○○○검찰청			
			24 A L ON